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부법

주체112(2023)년 2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18호로 채택

제1조 (대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부 법은 대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대부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자금수요자에게 상환을 전제로 일정한 기간 자금을 꾸어주는 신용업무이다.
- 대부수요자는 은행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자금을 꾸는 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이다.
- 보증자는 대부수요자의 대부금상환을 보증하고 상환하지 못한 대부금에 대한 상환책임

을 지는 은행과 기관, 기업소, 단체이다.

제3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대부사업을 하는 은행,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외화대부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4조 (대부사업에 대한 지도)

대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대부종류와 기준리자율, 은행기금의 적립기준과 리용범위, 대부금한도, 기한, 절차와 방법 같은것을 바로 정하며 부단히 개선해나가야 한다.

대부사업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은행이 한다.

제5조 (대부계획의 작성과 집행)

중앙은행은 화폐류통계획에 따라 대부계획을 작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 (대부원천, 은행을 통한 대부)

은행의 대부원천은 중앙은행 또는 다른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부, 예금, 은행기금 등이다.

대부는 대부수요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하여 받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대부신청)

대부를 받으려는 대부수요자는 대부신청문건을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부신청문건에는 대부금액과 용도, 기한, 담보재산, 보증자관계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 혀야 한다.

제8조 (대부신청문건의 검토, 승인 및 부결)

은행은 대부신청문건에 밝힌 대부수요자와 보증자의 상환능력과 상환방식을 10명 업 일안으 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대부신청 문건을 부결 하였을 경우에는 는 그 내용을 대부수요자에 게 2명 업 일 안으로 알려주어 야

한다.

제9조 (대부계약의 체결)

은행은 대부수요자의 대부신청을 승인한데 따라 그와 대부계약을 서면으로 맺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보증자와 보증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맺어야 한다.

대부계약문건에는 대부종류, 금액, 용도, 기한, 리자률, 담보재산, 보증자관계, 위약금, 연체료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은행은 대부수요자와 보증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계약을 맺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대부계약의 효력)

대부계약은 은행과 대부수요자가 대부계약문건에 수표를 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부계약의 효력발생을 달리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대부계약은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다.

제 11 조 (대부계약의 변경, 취소)

은행과 대부수요자는 호상 합의에 따라 이미 맺은 대부계약을 변경시킬수 있다.

은행이 대부수요자에게 계약에 정해진대로 대부금을 지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수요자가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이 경우 대부계약취소로 발생 한 손해는 책임있는 당사자가 보상한다.

제12조 (대부관련자료의 등록, 열람)

은행은 모든 대부계약자료를 중앙은행에 제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은행은 해당 대부수요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료해와 관련하여 중앙은행에 등록된 대부수요자의 자료를 열람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대부금의 지불)

은행은 계약된 대부금을 대부수요자의 돈자리에 정확히 넣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정형을 대부수요자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대부금의 리용정형에 대한 료해)

은행은 대부수요자의 대부금의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5조 (대부금상환)

대부수요자는 대부금을 대부계약기한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리자는 대부금을 리용한 기한에 따라 계산하여 지불한다.

은행은 대부수요자가 대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령수날자, 령수금액, 리자 등을 밝힌 확인문건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6조 (대부기한의 연기, 재대부)

대부수요자는 대부계약기한안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연기할수 있다.

국가적인 중요대상은 대부계약기한안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여도 그의 요구에 따라 재대부를 줄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는다.

제17조 (담보재산의 처분)

은행은 대부수요자가 대부계약기한안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계약문건에 밝힌 담보재산을 처분할수 있다.

은행은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대부수요자에 대한 재판기관의 판결, 판정에 따라 회수 되는

재산과 대부금의 상환담보로 넘겨받는 재산을 정해진 경로를 통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증자의 대부금상환)

보증자는 대부수요자가 대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계약에서 정한데 따라 자기가 보증한 금액을 대부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은행은 보증자가 보증한 금액을 대부금으로 상환한데 대한 확인문건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9조 (대부통계자료의 제출)

은행은 정해진데 따라 대부통계자료를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대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대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대부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1조 (통합, 분리, 정리, 조동 등에 따른 대부금의 상환책임)

대부를 받은 대부수요자가 다른 기관에 통합된 경우 통합한 기관이, 분리된 경우 대부금을 리용한 기관이, 정리된 경우 해당 상급기관이 대부금을 책임지고 상환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단위의 책임자가 조동, 해임되는 경우 그 단위에 새로 임명된 책임자가 대부금을 책임지고 상환하여야 한다.

제22조 (민사적책임)

대부사업과정에서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보상, 위약금,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제23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대부계약자료와 통계자료를 중앙은행에 제때에 등록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은행에는 10만~50만원
2. 대부금을 정해진 기일에 대부수요자의 돈자리에 넣어주지 않은 은행에는 10만~50만원
3. 은행 기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류용한 은행에는 10만~50만원
4. 대부금을 류용, 랑비, 사취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10만

원

제24조 (중지처벌)

이 법 제23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업무활동을 중지시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제25조 (몰수처벌)

대부사업과 관련한 질서를 어긋을 경우 위법행위로 얻은 돈과 물건, 위법행위에 리용된 설비와 물자를 몰수한다.

제26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처벌을 준다.

1. 대부계획을 현실성있게 작성하고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은행 기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류용하였을 경우
3. 대부신청문건에 대한 검토를 바로하지 않아 대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대부수요자에게 대부를 주도록 강요하였을 경우
5. 대부계약을 사실과 맞지 않게 체결하거나 제멋대로 변경시켰을 경우
6. 대부계약을 정해진대로 리행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게 하였을 경우
7. 대부계약자료와 통계자료를 중앙은행에 제때에 등록,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 제출하였을 경우
8. 대부금을 정해진 기일에 대부수요자의 돈자리에 넣어주지 않았을 경우
9. 대부금의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지 않았을 경우
10. 대부금을 류용, 랑비, 사취하거나 대부계약기한안에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11. 승인없이 담보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12. 은행의 담보재산에 대한 처분행사를 방해하였을 경우
13. 보증자의 대부금상환에 대한 책임을 리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14. 대부금상환을 부당한 조건을 내 걸면서 회피하였을 경우

15. 정실, 안면관계가 있는 대부수요자에게 다른 대부수요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 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27조 (형사적책 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 적책 임을 지운다.

제28조 (분쟁 해결)

대부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